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1582호 2024. 10. 31.(목)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4-2244호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2

규 칙

- 순천시 규칙 제997호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19
- 순천시 규칙 제998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24
- 순천시 규칙 제999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 순천시 규칙 제1000호 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순천시 규칙 제1001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훈 령

순천시 훈령 제338호 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정 일부개정규정 38

예 규

순천시 예규 제307호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폐지지침 43

고 시

- 순천시 고시 제2024-191호 개간사업 준공 승인 고시 45
- 순천시 고시 제2024-192호 순천시 주암 한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46
- 순천시 고시 제2024-193호 순천시 황전 건천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48
- 순천시 고시 제2024-194호 도로명주소 고시 50
- 순천시 고시 제2024-197호 개간사업 준공 승인 고시 53

회 램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홍보실 (☎ 749-5729, FAX 749-4625)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4-2244호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 사항 및 공간정보 보안관리 강화
-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위성영상) 완화
- 공간정보 보안관리 강화(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및 인수서 신설) 등

2. 주요내용

- 위성영상 세부 분류기준 완화(별표 1)
 - 공개제한 위성영상의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화

- 국정원·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위성영상 보안처리 대상 축소 가능
-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를 포함한 위성영상 온라인 배포 가능
- 공간정보 보안관리 강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및 인수서 신설)
- 공간정보 사용목적 및 활용, (사용 중)관리계획 및 (사용 후)보안 대책 마련
- 상위법 체계에 따른 용어 명확화, 자치법규 작성례에 따른 표기·중복 표현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callihan@korea.kr (팩스) 061-749-4660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061-749-5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복지국장”을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류할 때에는”을 “생산할 경우에는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에 한하여”를 “사람만”으로, “있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를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데이터”를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본항목·전”을 “기본항목·전체”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보안담당관”을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받은 사람을 이용하여야”를 “특례 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해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미리”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미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이 공간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내용,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내용·목적·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비공개 공간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료 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 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제 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안내도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신 청 자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 (단체)		직책	
	연 락 처		e-mail	
신청자료	공간정보의 종류	수치지도, 도시기반시설물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신청지역	지번, 도엽번호(INDEX), 지역(위치도) 등		
	제공방법	전산매체(형식), 종이도면(축척,수량)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학술연구, 용역사업 관련 등의 구체적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사용 중 관리계획(자료관리, 보관 등) 사용 후 보안계획(폐기, 반납 등)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신청기관장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인 수 자 또는 인수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소속기관 (단 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위 본인은 「순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 정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인수자 또는 인수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u>의 위원은 <u>시민복지국장</u>, 토지정보과장 및 도시, 건설, 도로, 상·하수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시민복지국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간사는 주소공간정보팀장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u>는 <u>7명의 위원</u>으로 구성하며, <u>위원</u>은 <u>안전교통국장</u>----- -----.</p> <p>② ----- <u>안전교통국장</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간정보 분류 등) ① (생략)</p> <p>② 공간정보를 <u>분류할 때에는</u>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공간정보 분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생산할 경우에는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u> ----- ----- -----.</p>
<p>제11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u>자에 한하여</u> 취급할 수 <u>있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u></p> <p>②·③ (생략)</p>	<p>제11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 ----- ----- <u>사람만</u> ----- ----- <u>있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u>회</u></p>	<p>제1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p>

현 행	개 정 안
<p>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 -----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데이터베이스</u>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 해방지</p>	<p>2. <u>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u> ----- ----- -----</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4. <u>공간정보데이터</u>에 대한 접근 권한 구분</p>	<p>4. <u>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 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 과물 포함)</u>-----</p>
<p>가.·나. (생 략)</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u>기본항목·전</u> 항목 등으로 구분</p>	<p>다. ----- <u>기본항목·전체</u> -----</p>
<p>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u>보안담당관</u>의 사전허가 후 이용</p>	<p>라. ----- ----- ----- ----- ----- ----- ----- <u>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u>----- -----</p>
<p>5.·6. (생 략)</p>	<p>5.·6. (현행과 같음)</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p>	<p>제15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p>
<p>(생 략)</p>	<p>(현행과 같음)</p>
<p>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를 위</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주용역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u>받은 사람을 이용하여야</u> 한다.</p>	<p>----- ----- ----- <u>특례 업체로 지정된 업체</u> <u>를 이용해야</u> ----- --.</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u>행정안전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7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u> <u>장</u>----- -.</p>
<p>제2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u>미리</u>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 ----- ----- <u>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u> <u>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u> <u>성해 미리</u> ----.</p>
<p>②·③ (생 략) <u><신 설></u></p>	<p>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u> <u>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u> <u>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u> <u>날인해야</u> 한다.</p>
<p>제2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시장</u>이</p>	<p>제2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 ----- . ----- <u>공개할</u></p>

현행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바상공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자료(원재료)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자료(원재료)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항공사진	비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표지의 소용돌이 및 제2도 계층의 관비기 및 관비기상의 장기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화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음영 및 등 축영상사 자료는 공개자료와 형식을 거쳐, 형식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좌상자료 정보가 포함된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 외 지역의 자료(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화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	○ 정밀 보정된 2차원자료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과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자료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전자지도	비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전자지도. ○ 촬영 당시 좌상자료 정보가 포함된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 외 지역의 자료(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전자지도 제공 또는 판매 시 인화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공	비공개	○ 국가기밀.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상학의 안전행형 등에 필요한 전파통신·가스 등 국가기밀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지도. ○ 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점 표시 불가.
해양공간	비공개	○ 잠정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잠정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신산업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공개제한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	비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기해도 등.
	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기밀특표시설로 지정된 상수원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지정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축척자료.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시설의 명칭 및 축척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기밀시설 차폐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형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도량·지질·지반도·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이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안내도.

개정안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바상공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과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자료(원재료)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자료(원재료)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항공사진	비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표지의 소용돌이 및 제2도 계층의 관비기 및 관비기상의 장기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화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음영 및 등 축영상사 자료는 공개자료와 형식을 거쳐, 형식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좌상자료 정보가 포함된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자료(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화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	○ 정밀 보정된 2차원자료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과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자료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인,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 할 대상은 국가기밀특표시설 또는 국가기밀특표시설 제외 지역이 함.
전자지도	비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좌상자료 정보가 포함된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자료(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전자지도 제공 또는 판매 시 인화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공개	○ 좌표가 포함되어 좌상자료 정보 포함, 정밀도 1:5,000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점 표시 가능.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 국가기밀.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상학의 안전행형 등에 필요한 전파통신·가스 등 국가기밀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지도. ○ 인더스트리메이커이전유대론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점 표시 불가.
해양공간	비공개	○ 잠정해역의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잠정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신산업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공개제한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	비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기해도 등.
	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기밀특표시설로 지정된 상수원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기밀시설 및 군사시설(유연선 포함)의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축척자료.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시설의 명칭 및 축척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기밀시설 차폐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형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도량·지질·지반도·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이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안내도.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신청(기관명)	신청(원인) (법인등의인 명)
주소	
소재지명 (단체)	지번
전화번호	e-mail
공간정보의 종류	주소지번, 도시계획시설정보, 방위사업, 환경영향
신청자료	지번, 도면번호(INDEX), 지적(황색도) 등
제공방법	실상제책(현상), 종이도면(출력,수정)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학술연구, 출판사업, 관광, 문화, 국제적, 학술연구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사용, 관리계획(자료관리, 보관 등) 사용 후 보안계획(폐기, 인산 등)

「공간정보-공간정보-보안관리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신청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청 귀하.

<신 설>

[별지 제5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인수자</td> <td style="width: 35%;">성명/기관명</td> <td style="width: 10%;">성</td> <td style="width: 10%;">년</td> <td style="width: 10%;">월</td> <td style="width: 10%;">일</td> <td style="width: 10%;">(법인등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또는</td> <td>주소</td> <td colspan="7"></td> </tr> <tr> <td>인수기관</td> <td>소재기관 (단체)</td> <td></td> <td></td> <td></td> <td></td> <td>소재</td> <td></td> <td></td> </tr> <tr> <td>요청자료</td> <td colspan="8"></td> </tr> <tr> <td>사용목적</td> <td colspan="8"></td> </tr> <tr> <td>및</td> <td colspan="8"></td> </tr> <tr> <td>활용계획</td> <td colspan="8"></td> </tr> <tr> <td>관리대학</td> <td colspan="8"></td> </tr> <tr> <td></td> <td>제공자료</td> <td colspan="7"></td> </tr> <tr> <td>제</td> <td>제공방법</td> <td colspan="7"></td> </tr> <tr> <td>내</td> <td>제공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담당자</td> <td></td> <td></td> </tr> <tr> <td>역</td> <td>보안대학</td> <td colspan="7"></td> </tr> </table> <p>위 본인은 「국립시·군·자치단체 공간정보 보인관리 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제공받은 정보에 의거 한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범위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의거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 - 압축본 등은 제공기관 필수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수자 또는 인수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p> <p>실인서장 귀하</p>	인수자	성명/기관명	성	년	월	일	(법인등등록번호)	-	-	또는	주소								인수기관	소재기관 (단체)					소재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학										제공자료								제	제공방법								내	제공기간					담당자			역	보안대학							
인수자	성명/기관명	성	년	월	일	(법인등등록번호)	-	-																																																																																																					
또는	주소																																																																																																												
인수기관	소재기관 (단체)					소재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학																																																																																																													
	제공자료																																																																																																												
제	제공방법																																																																																																												
내	제공기간					담당자																																																																																																							
역	보안대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규

칙

순천시 규칙 제997호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③ 총괄부서는 순천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및 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규칙 제998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를 “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있을 경우 용자 한도를 7억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중 여성기업란 다음에 청년기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년기업	순천시
-------	-----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일반, 우대)지원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종 (주 생산 품)	()		설 립 년 월 일		
산 업 분 류 번 호			종업원수	(사무직 , 생산직)	
연 간 매 출 액	내수	백만원 천불	자 산 규 모	부 채 자 본 금	백만원 백만원
용 자 신 청 액	백만원		대 출 회 망 금 용 기 관	은행	지점
용 자 금 의 용 도	① 구조 구도화 사업자금 () ② 경영안정자금 () ③ 기술개발 사업자금 () ④ 기타 육성발전자금 ()				
우 대 기 업	① 장애인기업 () , ② 여성기업 () , ③ 청년기업 () ④ 수출 유망중소기업 () , ⑤ 고용(일자리) 우수기업 () ⑥ 전라남도유망중소기업 () , ⑦ 전남형 강소기업 () ⑧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산업평화상 수상·기타 장관표창 ()				
용 자 한 도 상 향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 ,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				
위와 같이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업소 必 확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기타 우대기업 확인서류 1부. 5. 기타 금융기관 요구자료(추후 금융기관 제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융자조건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기업당 대출한도액을 <u>3억원</u>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1. 2. (생 략)</p> <p>②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로 하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리 <u>3%</u>이내로 하며, 우대기업에 대하여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조(융자조건 등) ① ----- ----- ----- <u>5억원</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 ----- <u>4%</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있을 경우 융자 한도를 7억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u></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이자차액 보전금리 우대기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기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생 략)</td> <td>(생 략)</td> </tr> <tr> <td>◦여성기업</td> <td>중소벤처기업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td> </tr> <tr> <td>(생 략)</td> <td>(생 략)</td> </tr> </tbody> </table>	대상기업	비 고	(생 략)	(생 략)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u><신 설></u>	<u><신 설></u>	(생 략)	(생 략)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이자차액 보전금리 우대기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기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여성기업</td> <td>중소벤처기업부</td> </tr> <tr> <td>◦청년기업</td> <td>순천시</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대상기업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	순천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상기업	비 고																				
(생 략)	(생 략)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u><신 설></u>	<u><신 설></u>																				
(생 략)	(생 략)																				
대상기업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	순천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 ()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	()	설 립 년 월 일	
산 업 분류번호		종업원수	(사무직 , 생산직)
연 간 매 출 액	내수 수출 백만원 천불	자산규모	부 채 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음자신청 금 액	백만원	대출희망 금융기관	은행 지점
음자금의 용 도	① 구조 구도화 사업자금 () ② 경영안정자금 () ③ 기술개발 사업자금 () ④ 기타 육성발전자금 ()		
위와 같이「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인허가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비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상 공장, 제조시설 여부확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기타 금융기관 요구자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일반, 우대)지원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 ()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	()	설 립 년 월 일	
산 업 분류번호		종업원수	(사무직 , 생산직)
연 간 매 출 액	내수 수출 백만원 천불	자산규모	부 채 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음자신청 금 액	백만원	대출희망 금융기관	은행 지점
음자금의 용 도	① 구조 구도화 사업자금 () ② 경영안정자금 () ③ 기술개발 사업자금 () ④ 기타 육성발전자금 ()		
우대기업	① 장애인기업() ② 여성기업() ③ 청년기업() ④ 수출 유망중소기업() ⑤ 고용(일자리) 우수기업() ⑥ 전라남도유망중소기업() ⑦ 전남형 강소기업() ⑧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산업평화상 수상기업 장관표창()		
유자한도상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위와 같이「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업소 ※ 확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4. 국제·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기타 우대기업 확인서류 1부 5. 기타 금융기관 요구자료(우후 금융기관 제출)		

순천시 규칙 제999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만3세부터 만6세”를 “3세부터 6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탁아방 운영) 문화건강센터 이용자 및 교육과정 수강자 자녀 중 <u>만3세부터 만6세</u> 까지의 아동을 위한 탁아방을 운영(09:00~18:00)할 수 있다.	제9조(탁아방 운영) ----- ----- - <u>3세부터 6세</u> ----- ----- -----.

순천시 규칙 제1000호

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순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청소년보호법</u>」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보호법</u>」 ----- ----- ----- -----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 --.</p>
<p>1. "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1. ----- <u>19세</u> ----- -----.</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p>	<p>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 2. (생 략) <u><신 설></u></p>	<p>1. · 2. (현행과 같음) 3. <u>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u></p>
<p><u><신 설></u></p>	<p><u>로부터 6개월 전에 순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u> 4. <u>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u></p>

순천시 규칙 제1001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만 3세부터 만 6세”를 “3세부터 6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육실 운영) ① 회관 수강 생 자녀 중 <u>만 3세부터 만 6세</u>까 지의 아동을 위한 보육실을 운영 (09:00~18:00)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보육실 운영) ① ----- ----- <u>3세부터 6세</u>----- ----- -----.</p> <p>② (현행과 같음)</p>

훈

령

순천시 훈령 제338호

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
에 발령한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정 일부개정규정

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정 일부개정규정

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를 “제3조”로, “징구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별표 위반행위란 제1호 중 “법”을 “영리를 목적으로 법”으로 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을”로 하며, 같은 표 위반행위란 제2호 중 “법”을 “영리를 목적으로 법”으로 하고, 같은 표 위반행위란 제8호 중 “한”을 “하게 한”으로 한다.

별표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통사항

-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 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 감경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0% 감경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경

- 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 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50% 감경
- 사.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보호·학자금·지방세감면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50% 감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 19세</u>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2. (생략)</p> <p>제5조(법준수서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제4조</u>에 따른 감경대상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u>징구하여야</u> 한다.</p> <p>[별표] 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p> <p><u>과징금 감경기준(제3조 관련)</u></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p> <p>1. ----- <u>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19세</u> ----- -----.</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법준수서약) ----- ----- <u>제3조</u>에 따른 감경대상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u>받아야</u> -----.</p> <p>[별표] 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p> <p><u>과징금 감경기준(제3조 관련)</u></p>		
위 반 행 위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			50% 감경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u>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u>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시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시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시	
2. <u>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u>	매체물 수량 10개 미만시	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30개 미만시	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50개 미만시	
3. (생략)				
4. (생략)				
5. (생략)				
위 반 행 위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			50% 감경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u>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u>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7.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6. (생략)				3. (현행 제7호와 같음)			
7. (생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소유예선 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소유예선 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 감경 마.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만 해당한다.) 50% 감경 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0% 감경 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0% 감경 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50% 감경 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12. (생략)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 감경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0% 감경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경 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보호·학자금·지방세감면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50% 감경 12. (현행과 같음)			

예

규

순천시 예규 제307호

순천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폐지지침

순천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폐지지침

순천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24-191호

개간사업 준공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1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준공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 1. 사업의 목적 : 농지조성
- 2. 사업의 내용 : 농작물 재배
- 3. 사업의 효과 : 농업소득 증대
- 4. 사업의 지역·기간 및 시행자

구분	토 지 소 재 지					승인 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자	
	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승인 24-1	순천	상사	비촌	702-5	임	4,980	104,060	2024.02.19. ~ 2024.10.24.	순천시 옥천길 ***	위난*

□ 고시 기간 : 2024. 10. 31. ~ 2024. 11. 30.(1개월 간)

순천시 고시 제2024-192호

순천시 주암 한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순천시 주암 한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 한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2. 사업의 목적

- 한곡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 지역적 여건과 특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마을 발전을 모색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한곡리 한곡마을 일원
- 면 적 : 650,000m²
- 가구 및 인구 : 45가구 / 56명
- 주요 사업내용

- H/W : 담장정비 및 마을안길 덧씌우기, 안전거리 조성, 영농폐기물 분리수거장 등
- S/W : 지역역량강화교육(선진지 / 주민화합 등)

4.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5.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한곡마을의 고유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 조성

7. 사업시행자 : 순천시청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061-749-88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 2024-193호

순천시 황전 건천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순천시 황전 건천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황전 건천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2. 사업의 목적

- 건천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 지역적 여건과 특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마을 발전을 모색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 건천마을 일원
- 면 적 : 1,200,000m²
- 가구 및 인구 : 32가구 / 62명
- 주요 사업내용

- H/W :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마을회관 증축, 마을 무선 방송장치 설치 등
- S/W : 지역역량강화교육(선진지 / 주민화합 등)

4.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5.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건천마을의 고유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 조성

7. 사업시행자 : 순천시청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061-749-88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4-19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신규·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31.

순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길 13 외 20건 (신규 21)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749-55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건물번호 부여, 폐지 조서

연번	고시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우편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900-4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길 13 (대룡동)	20241031	57936	자연마을 대룡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2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출신리 538-2, 538-3, 544-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414-7	20241031	57989	상사호 진입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3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714-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모후실4길 29	20241031	57912	자연지명 모후실을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4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363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45	20241031	57989	자연마을 중대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5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복대리 228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복대길 49	20241031	57911	자연마을 복대를 인용 도로명 부여	
6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검암리 69-1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옥지길 91-3	20241031	57918	옥산에서 벌교 지동간 노선으로 각 지명의 첫자를 인용 도로명 부여	
7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5-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창길 53-109	20241031	58020	예전에 선창이 있다하여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8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725-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마산길 160	20241031	58027	법정리 마산을 인용 도로명 부여	
9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320-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흥길 10	20241031	57951	자연마을 신흥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0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22-4, 20-1, 22-9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길 42	20241031	57959	자연마을 구만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1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387-3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건천길 4	20241031	57903	자연마을 건천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연번	고시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우편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12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156-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수변길 52	20241031	57926	강청 수변공원 인용	
13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3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4길 8	20241031	57927	서면산단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14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74-2, 56-2, 840-7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임촌동길 27-1	20241031	57906	지리적으로 자연마을 임촌의 동쪽에 조성한 마을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5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464-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개운길 47-1	20241031	57905	자연마을 개운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6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00-9, 1100-11, 1100-14, 1101-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로 1145	20241031	58024	여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양시의 행정명칭 조합	
17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40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404	20241031	58032	국도2호선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의 의미	
18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31, 734-2, 735-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165	20241031	58019	법정리 상삼에서 상산간 진입 노선으로 각 지역 첫자를 인용 도로명 부여	
19	"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176-10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307-85 (교량동)	20241031	57997	국가지정 명승 제41호 순천만 인용 도로명 부여	
20	"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207-5	전라남도 순천시 남제새길 56 (인제동)	20241031	57998	남제동 중심을 관통하는 신도로 개설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21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98-4, 898-8, 898-9,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00-8, 2200-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3로 77	20241031	58035	울촌산단단지 명칭 인용 도로명 부여	

순천시 고시 제2024-197호

개간사업 준공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1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준공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농지조성
2. 사업의 내용 : 농작물 재배
3. 사업의 효과 : 농업소득 증대
4. 사업의 지역·기간 및 시행자

구분	토지소재지					승인 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자	
	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주 소	성명
승인 23-1	순천	해룡	하사	58-1	임	2,212	7,400	2023.01.12. ~ 2024.10.29.	순천시 해룡면 ***	백승*

□ 고시 기간 : 2024. 10. 31. ~ 2024. 11. 30.(1개월 간)